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3-01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처분이 예정된 기업(주식회사 금빛 등 40개사)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청문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공고 기간 : ’23. 1. 25(수) ~ ’23. 2. 8(수)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

3. 청문 대상 : 붙임 참조

* (사)한국경영혁신형중소기업협회가 사후관리한 결과, 40개사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어「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취소를 통보함

4. 근거 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제도 운영규정」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7조(선정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메인비즈 선정기업이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메인비즈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규제, 국세체납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한 경우
5. 기타 제16조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선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평가기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선정취소 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기업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선정기업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해당기업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메인비즈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기업의 확인서를 반납 받아야 하며, 해당기업이 확인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 사실을 메인비즈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청문 실시 및 의견 제출

가. 청문 일시 : ’23. 2. 24.(금) 10:00

나. 청문 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회의실

* 청문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청문 주재자 : 변호사 조○○

라. 청문 대상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必

*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사전 제출

마. 의견 제출 : ’23. 2. 22.(수) 18:00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오프라인)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 (전자우편) kbk1206@korea.kr

바. 기타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 문의 사항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031-201-69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 대상자 현황 ※ 청문 대상자 중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별도 공고 게시

연번	업체명	대표자	인증일	소재지
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청선	김*욱	2021-01-07	평택시 소사2길 184-18, 나동(소사동)
2	자안 주식회사	안*찬	2020-11-02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03(목내동)
3	㈜돈키호테피싱	주*범	2021-03-11	광주시 경충대로 1855(장지동)
4	주식회사 에스엔케이테크놀러지스	김*기	2020-03-30	의왕시 오전공업길 5(오전동, 2층)
5	㈜개미와베짱이닭유통	김*민	2020-02-04	시흥시 방아다리길 12(대야동)
6	㈜큐젠바이오텍	이*대	2020-04-17	시흥시 공단2대로139번길 22, 2마동 701호(정왕동, 시화공단)
7	㈜에이치티에스	최*길	2020-10-27	안성시 서운면 송죽길 63
8	주식회사 휴플러스	심*경	2020-11-26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213-20, 1층 101호
9	주식회사 모돈상사	홍*찬	2020-11-29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62번길 18-11
10	㈜에코라인플러스	김*용	2022-05-04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311, 311-1호(대화동, 신동아노블타워)
11	한성토건㈜	김*훈	2022-06-07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30 ,304호(영덕동)
12	이산엠에스㈜	윤*근	2020-03-20	광주시 장지1길 73(장지동)
13	㈜코튼클라우드	김*영	2020-09-22	김포시 풍무2로 25 6층(풍무동, 코튼빌딩)
14	㈜만재물류	박*순, 김*형	2021-11-22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912번길 54, A동 4층
15	주식회사 그린켐	이*득	2020-12-22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 121-71
16	하이센스	김*숙	2020-12-22	김포시 대곶면 덕포진로 10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